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기원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093
----------	-------

발의연월일 : 2025. 9. 18.

발 의 자 : 홍기원 · 차지호 · 윤후덕
이해식 · 이연희 · 송옥주
장철민 · 이기현 · 박정현
최혁진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재판소는 북한에 전단등 살포로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규정을 비례원칙 위반 및 표현의 자유 침해로 보아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음(2020헌마1724 등).

그러나 전단등 살포가 접경지역 주민 등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남북대치 상황을 심화시키고 있는 가운데, 헌법재판소 또한 이에 대한 제한이 입법목적상 정당하고 판시하면서 신고제 도입 등을 대안으로 제시한 바 있어 이를 반영한 법률 개정이 필요함.

이에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전단등 살포의 신고 제도를 규정함으로써 법률의 위헌성을 해소함과 아울러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 및 평화통일 지향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신설 등).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6호 중 “전단등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3조 또는 제20조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북한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부하거나 북한으로 이동(단순히 제3국을 거치는 전단등의 이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시키는 행위”를 “전단등을 군사분계선 및 북방한계선이남에서 풍력, 해류 또는 기계장치 등을 활용하여 북한으로 이동시키는 행위”로 한다.

제24조제1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4장에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전단등 살포 신고 등) ①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에서 전단등을 살포하려는 자는 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고서를 첨부하여 살포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살포 장소가 두 곳 이상의 경찰서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경찰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목적

2. 일시(살포에 소요되는 예상 시간을 포함한다)

3. 장소

4. 전단등의 종류 및 수량

5. 살포 방법

6. 신고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으로
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주소

나. 성명

다. 직업

라. 연락처

② 관할 경찰서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1. 전단등 살포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현저한 경우

2. 전단등 살포 장소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의 주변 지역으로서 전단등 살포로 인하여 시설이나 군 작전의 수행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전단등 살포 장소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1조에 따른 위험구역인 경우

4. 전단등 살포 중 「항공안전법」 제12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비행승인 대상인 전단등 살포에 대해서 해당 비행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5. 전단등 살포로 인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에 위반되거나 위반될 가능성이 현저한 경우

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호

나.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7조제1항

③ 관할 경찰서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2항에 따라 신고 수리가 거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단등 살포를 강행하려는 자에 대하여 상당한 시간 이내에 자진 해산할 것을 요청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해산을 명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해산 명령을 받은 자는 지체 없이 해산하여야 한다.

⑤ 관할 경찰서장은 제3항에 따른 해산 명령을 받은 자가 제4항에도 불구하고 이를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전단등 살포를 제지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신고, 자진 해산의 요청, 해산 명령 및 제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

의 부정한 방법으로 하고 전단등을 살포하는 행위

2. 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신고 수리가 거부된 전단등의 살포

3. 제24조의2제4항에 따른 해산 의무의 불이행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경찰서장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단등 살포 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전단등을 살포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5. (생 략) 6. “살포”라 함은 선전, 증여 등을 목적으로 <u>전단등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3조 또는 제20조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북한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부하거나 북한으로 이동(단순히 제3국을 거치는 전단등의 이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시키는 행위를 말한다.</u>	제4조(정의) ----- -----. 1. ~ 5. (현행과 같음) 6. ----- ----- <u>전단등을 군사분계선 및 북방한계선 이남에서 풍력, 해류 또는 기계장치 등을 활용하여 북한으로 이동시키는 행위</u> ----- ----- ----- -----.
제24조(남북합의서 위반행위의 금지)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켜서는 아니 된다. 1.·2. (생 략) 3. <u>전단등 살포</u> ② (생 략) <u><신 설></u>	제24조(남북합의서 위반행위의 금지) ① ----- ----- ----- ----- -----. 1.·2. (현행과 같음) <u><삭 제></u> ② (현행과 같음) <u>제24조의2(전단등 살포 신고 등)</u>

①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에
서 전단등을 살포하려는 자는
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적은 신고서를 첨부하여 살
포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살
포 장소가 두 곳 이상의 경찰
서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경찰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
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
우에도 또한 같다.

1. 목적

2. 일시(살포에 소요되는 예상
시간을 포함한다.)

3. 장소

4. 전단등의 종류 및 수량

5. 살포 방법

6. 신고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
항

가. 주소

나. 성명

다. 직업

라. 연락처

② 관할 경찰서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1. 전단등 살포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현저한 경우
2. 전단등 살포 장소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의 주변 지역으로서 전단등 살포로 인하여 시설이나 군작전의 수행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전단등 살포 장소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1조에 따른 위험구역인 경우
4. 전단등 살포 중 「항공안전법」 제12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비행승인 대상인 전단등 살포에 대해서 해당

비행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5. 전단등 살포로 인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법에 위반되거나 위반될
가능성이 현저한 경우

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
에 관한 법률」 제5조제1
호

나.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
염퇴적물 관리법」 제7조
제1항

③ 관할 경찰서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2항에 따라 신고 수리가 거
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단등
살포를 강행하려는 자에 대하
여 상당한 시간 이내에 자진
해산할 것을 요청하고 이에 따
르지 아니하면 해산을 명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해산 명령을
받은 자는 지체 없이 해산하여
야 한다.

⑤ 관할 경찰서장은 제3항에
따른 해산 명령을 받은 자가
제4항에도 불구하고 이를 따르

<신 설>

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전단등
살포를 제지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
른 신고, 자진 해산의 요청, 해
산 명령 및 제지의 방법 및 절
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제2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한 자에게
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
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
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하고 전단등을 살포하는 행위
2. 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신고
수리가 거부된 전단등의 살포
3. 제24조의2제4항에 따른 해산
의무의 불이행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경찰서장이 부과·징수한
다.